

### 【사례 5】기타

-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금지
  -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 및 저녁시간(각 1시간),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52시간,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※ 단, 시간외근무시간은 제외함
  - 자정 이후에도 근무하는 심야업종인 경우
  -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겸직업무의 성격상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저술, 번역, 서적출판, 작사작곡 등
  - 1회적인 저술·번역 등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소속기관 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
※ (예) 주기적 업데이트 및 월 00회·연 00회 등 기간을 정한 저술 등
  - 직접 서적을 출판·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서적(학습지·문제지 등)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됨
- 야간 대리운전 : 공무원이 야간 대리운전에 종사할 경우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
- 블로그 활동
  -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제작·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
  - 블로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불허
- 모바일 애플리케이션·이모티콘 제작·관리
  - 애플리케이션·이모티콘을 계속적으로 제작·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
  - 다만,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허
-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도 겸직금지
  - 다단계 판매업은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금지
  - 변호사법 제38조에 따라 변호하는 변호사업을 영위하면서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음

### 【사례 7】영리를 목적으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. 혹시 '임상실험'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되나요?

- 영리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계속성이 예견된다면 겸직허가권자인 소속기관의 장에게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따라서 상기 임상실험이 1회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속성이 없어 겸직 허가의 대상이 아니나, 그 이외의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 업무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. 어떤 업무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국가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, 해당 국가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,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·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, 상기 답변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동 복무규정 제25조·26조에 따른 영리업무·겸직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으로서, 귀하께서는 임상실험 참여 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 기타 관련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(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 민원/정책 Q&A)